

# 5 알아두어야 할 사항

## 공공 시설에서 출신 국가 차별

- 1 뉴저지 차별 금지법(LAD)은 공공시설에서 실제 또는 인지되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하는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합니다.** 즉, 난민, 이민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기업, 식당, 학교, 병원, 의사 사무실, 정부 기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인종, 출생 국가, 문화 또는 언어에 따른 차별이 불법입니다.
- 2 출신 국가를 이유로 동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.**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출신 국가를 이유로 숙박 시설, 시설, 특권 또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레스토랑에서 라틴계 고객이라는 이유로 백인 고객보다 더 오래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, 소매업자는 절도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또는 인지되는 국적에 기반하여 귀하가 쇼핑할 때 프로파일링 할 수 없습니다.
- 3 공공 시설은 국적에 따른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** 국적에 따른 괴롭힘에는 적대적, 비하적, 위협적인 발언, 모욕적인 제스처, 특정인의 국적을 기반으로 한 인종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. 공공 시설은 국적에 기반한 괴롭힘을 해결해야 합니다.
- 4 의료 환경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은 불법입니다.** 의료진은 실제 또는 인지되는 국적을 이유로 귀하의 증상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, 치료를 거부하거나, 치료를 덜 제공하거나, 귀하의 허락 없이 약물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치과 의사는 영어를 못하거나 파키스탄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5 공공 시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** 예를 들어, 학교에서는 영어 학습자(ELL)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이나 역량에 기반하여 그 수준보다 떨어지는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공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이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지만, F-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예외입니다.

LAD법 위반 신고, 차별 불만 제기 또는 LAD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[NJCivilRights.gov](http://NJCivilRights.gov)를 방문하거나 1-833-NJDCR4U (1-833-653-2748)로 전화하세요. DCR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저지의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LAD법을 시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[여기](#)를 클릭하세요.

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[NJCivilRights.gov](http://NJCivilRights.gov) 를 방문하거나 [1.833.NJDCR4U](tel:1833NJDCR4U)로 전화하세요.



뉴저지 법무부 장관실

[NJCivilRights.gov](http://NJCivilRights.gov)



@CivilRightsNJ #CivilRightsNJ #StandUpAgainstHate

